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19호 2021. 9. 9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449호)

규 칙

-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예천군 규칙 제1295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9월 9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49호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금융기관을”을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예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의 제목 “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”을 “(상품권의 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

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단서 중 “군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”를 “군수가”로, “있는”을 “있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류 상품권 외에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

제7조제3호 중 “잔액을 요구하는”을 “잔액이 발생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)”을 “(판매대행단체의 협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①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발행된 상품권은”을 “사용자는 상품권을”로, “없다”를 “없으며,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할인 및 수수료)”를 “(수수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상품권 활성화시책)”을 “(상품권 활성화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전을 위하여”를 “활성화 및”으로, “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”를 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개최를 할 수 있으며, 경품지원을 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,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·용역·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품권의 할인 판매

액은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명시하고, 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정의 정비(제2조)

- 판매대행점에 전자금융업자 추가

나.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추가(제9조)

-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

다. 사용자의 준수 사항 추가(제10조)

○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
라.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구체화(제13조)

-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및 단서 구체화
- 개인 월 구매한도 70만원 설정, 연 구매한도 삭제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9월 9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295호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”를 “제4조제3항에 따른 종이류 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정”을 각각 “등록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10조제3항에 따른”을 “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판매대행점”을 “예천군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6개월간”을 “3개월간”으로, “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

이내에 담당”을 “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3조제3항”으로, “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”을 “개인은 월 70만원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3호서식]

예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(개인)

구매자 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권종	매수 (장)	구매금액 (원)
			5천원권		
			1만원권		
			3만원권		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및 내용]

1. 개인정보는 예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(10% 이내) 한도관리를 위해 수집되며, 할인 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수집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
2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.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4. 수집된 개인정보는 예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 한도관리를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할인구매를 위해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및 내용]에 동의합니다. ☐예 ☐아니오

본인은 상품권 환불 시 판매 당일(구매한 금융기간 영업시간까지)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,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. ☐예 ☐아니오

20 년 월 일

할인 구매자 : _____(서명)

※ 신분증을 지참한 만 19세 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하며, 대리 구매는 불가합니다.

※ 첨부서류 : 실명확인증표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예 천 군 청

◇개정이유

환전 및 구매한도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예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환전한도 초과 신청 관련(제9조)

○ 환전한도 초과 신청 제출 기관을 판매대행점에서 예천군으로 변경

나. 환전된 상품권 보관기간 변경(제10조)

○ 환전된 상품권의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

다. 구매한도 변경(제11조)

○ 개인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